

# 서울특별시서초구재단법인우면산내셔널트러스트설치및운영조례안심사보고서

(의안번호 제63호)

○ 2003. 9. 18.  
○ 도시건설위원회  
위 원 장

##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3. 9. 15. 서초구청장
- 나. 위원회 회부일자 : 2003. 9. 16.
- 다. 상 정 일 자 : 2003. 9. 18.
- 라. 위원회 개최회수 및 일수 : 제138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1회1일)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도시관리국장 김기대)

### 가. 제안이유

우면산내셔널트러스트운동을 추진할 재단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면산내셔널트러스트운동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우면산 지역의 자연경관 보전 및 자연자원을 사회적으로 공유하여 주민의 주요 자연환경을 보호하려는 것임.

### 나. 주요골자

- 재단의 법적성격 및 재단이 추진할 사업을 규정함. (안 제2조 내지 제3조)
- 기본재산의 조성 및 운영재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 내지 제8조)

- 재단운영 규정인 정관에 규정할 사항 및 임원 및 이사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 내지 제6조)
  - 구의 업무위탁, 공무원과견 등 행정지원 사항과 재단의 협조사항 등을 규정함. (안 제10조, 11조 내지 제12조)
- ※ 총 13조 및 부칙으로 구성

## 2. 검토결과

### 가. 개요

- 2003년 6월 25일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심의시 우면산내셔널트러스트 출연금 10억원을 승인하였는 바, 이의 집행근거를 마련하며 향후 필요시 운영비보조 근거 및 많은 후원회원의 참여를 유도하고 내셔널트러스트운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우면산 지역의 자연경관보전 및 자연자원을 공유화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자유로운 이용을 통해 건강한 시민사회를 도모함과 아울러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출한 것임.

### 나. 검토내용

- 조례제정목적(안 제1조)
  - 서초구 권장 사업인 우면산의 자연경관보존 및 자원의 사회적 공유화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문제가 없으나 『(이하 “재단”, 영문표기 : Umyeonsan National Trust Foundation)』을 『(이하 “재단”, 영문표기 : Umyeonsan..... Foundation 이라한다)』로 자구정정을 하는 것이 좋겠음.

- 설립근거 (안 제2조)
  -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설립) 규정에 의거 재단법인을 설립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으나, 구의 부속 재단이므로 자율성 및 독립성이 다소 약화될 가능성이 있음.
- 기본재산의 조성 (안 제4조)
  - 체계적 및 효율적으로 우면산내셔널트러스트 운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초기에 관에서 주도(인력 및 재정지원 등) 시행하는 것은 적절하겠으나, 순수한 민간단체로의 이관도 고려하여야겠음.
- 정관(안 제5조)
  - 정관변경시 사전동의를 불법부당한 운영을 예방하고 최소한의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함.
- 임원 및 이사회 등(안 제6조)
  - 재단법인 대표자에 대한 선임방법을 정관에 명문으로 규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공무원의 파견 (안 제12조)
  -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파견근무) 규정에 의거 필요시 공무원의 파견근거를 명문화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 없음.
- 조례안 부칙 제2항
  - 제출된 조례 시행전 유사재단법인을 설립·운영코자 하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음.
- 기 타
  -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이 아니지만 사업의 성질에 비추어 조례안과 정관에 사업계획서 및 결산에 관하여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12조에 준하는 규정을 둬야 바람직하겠음.

####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우면산트러스트운동을 해야하는 경위에 대한 설명과 우면산내셔널트러스트 영문표기에 있어서 소리나는 대로 우면산이라고 표기해야 하는지 우면마운틴이라고 해야 하는지?

답) 우면산 소재 공무원교육원에서 예술의전당까지 8,950평의 녹지를 3년간 허가 제한하여 올 8월7일자로 해제되어 구릉지 등의 개발행위 허가신청시 허가를 거부할 명분이 없어 영국, 일본 등의 사례와 우리나라의 7년전 무등산 트러스트 운동사례가 있어 우면산의 녹지를 보존코자 이 운동을 전개하게 되었으며 영문표기는 우면마운틴이라고 표기하는 것보다 우면산은 고유명사이며 또한 우면산이라고 할 경우 우리나라 사람에게 쉽게 전달될 수 있을 것이라는 뜻에서 용어표기를 선택함.

질) 서초구 관내 우면산외의 구릉지를 대상으로 개발행위허가 신청이 들어올 경우 대책은 무엇이며 우면산에 개발허가를 내준다면 개발은 현실적으로 가능하며 환경단체 및 주민들이 그것을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전망은?

답) 개발을 위해 형질변경허가가 들어오면 도시계획위원회 등의 절차에 의거 제재를 할 수 있으나 땅 소유주들한테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정이 될 수 있고 법적소송에 대응하기가 어려워 우선 필요한 땅을 요소요소에 사서 내셔널 트러스트 재단법인으로 취득해 개발을 방지 하고자 함이며 우면산의 경우 경사도가 심하고 수목이 울창한 그런 곳은 허가 들어올 수 없으며 다만 남부 순환로를 끼고 평평한 그런 곳에 허가신청이 있을 경우 환경단체나 NGO에서 반대할 것에 대한 것은 생각 않고 있음.

질) 우면산내셔널트러스트관련 회원 5,000여명에 4억5,000만원의 기금조성은 작은 액수가 아닌지? 향후 전망은 어떠한지 또한 정관의 임원중 상임이사 1인을 구청장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의 직급과 어떤 분으로 할 것인지?

답) 조례제정이 늦어짐에 따라 세금관련 손비처리 등의 문제로 회원가입이 저조 하지만 조례제정과 우면산내셔널트러스트 법인허가를 득할 경우 동참자가 급속도로 늘어날 것으로 것이 예상되며 주민모금 20억을 현재 목표로 하고 있으며 상임이사의 소속공무원과 직급은 아직 미정임.

질) 우면산트러스트운동과 관련 회원이 될 경우 돈 기부한 사람은 모두 등기가 되는지?

답) 회원은 우면산트러스트의 법인명의로 등기가 되며 개인 각자에게 등기는 사실상 불가능하여 재단명의로 등록증서로 토지소유권이 있음을 증명하려고 함.

질) 법인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중 제4조1항의 기타수입금 어떻게 조성할 것이며 제4조2항의 보조금의 범위와 한도는 어느정도 예측하고 있으며 보조금 교부 지속성 문제, 순수민간단체의 이관문제, 또한 제6조1항의 임원 및 이사회 규정과 운영 재단법인 대표자측 이사장에 대한 선임 방법 등은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수정, 보완할 의향은 없는지?

답) 기부금을 은행에 적립했을 경우 이자 등이 기타수입금이며 우면산트러스트 운동 관련 이벤트 행사, 바자회 등의 행사시 이득금 등이 기타수입금이 될 것이며 출연금 및 보조금은 구 예산에 의한 10억 출연금이 있는데 당 운동이 본궤도에 오를 때까지 직원을 파견해서 사업집행을 위한 필요자금 등이 해당되며 이사장 선임관계는 지난번 이사회에서 이사장을 전 보사부 송정숙 장관이 이사장으로 선임되어 정관에는 넣지 않았으나 이사장 선임방법을 정리하여 수정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음.

질) 본 운동과 관련 종합토지세 관련하여 감면은 가능한지?

답) 세금감면 조례가 있어야 감면이 가능하나 아직은 관련 조례가 없음.

질) 조례나 정관에 명시된 이사 등에 대한 역할 분담 등이 제대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답) 정관과 조례에 미진한 부분은 규칙으로 정리할 계획임.

질) 운영자의 편의에 의해 재단법인과 사단법인을 가르면 안되며 시민단체는 거의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으며 사단법인으로 해야 의사결정을 총회의결에 의하므로 결정의 어려움으로 형질변경 등을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다고 보며 이사 30명이 좌지우지 할 수 있는 법인은 안되며 사단법인 설립으로 방향을 바꾸어야 된다고 보는데?

답) 사단법인으로 할 것인가 재단법인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변호사 및 회계사 등 관계인으로부터 자문에 의하여 사단법인 설립할 경우에는 총회시 많은 모든 회원들에게 통보하는 문제 등 사업의 원활성과 효율적인 측면에서 재단법인으로 가는 것이 유리한 방안으로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임.

질) 주민들에게 땅 한평 갖기라고 해놓고 지금은 재단명의로 하고 결국은 소액투자자들은 아무 권리가 없어지는데?

답) 땅 한필지에 모든 소유자를 현실적으로 등기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으며 회원들에게는 상징적인 소유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등급증서를 해주려고 함.

질) 이사선임에서 선임후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 등의 제도적인 절차가 보완되어야 된다고 보면 보완되지 않을 경우 30명의 이사들이 모든 결정을 좌지우지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답) 재단법인에 대한 특성상 사단법인에서 하는 총회와는 성격이 달라 재단법인의 이사회쪽에서 처리할 문제이며 전체총회를 한번 하려고 하면 보통 간단한 문제가 아니어서 이사선임은 직능단체장을 위주로 초청한 발기인 대회에서 이사들을 자체적으로 선임한 것이며 구청장이 임명한 사항이 아님.

질) 의회가 조례를 만들고 난 뒤에 그것이 어떻게 운영되며 예산 및 결산이 어떻게 되는지 보고 받지 않는다면 잘못된 조례가 아닌가?

답) 순수하게 시민단체로 가야할 단체이므로 출연금을 그쪽으로 넘겨주면 법적 근거가 문제가 되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최소한의 간접규제를 할 수 있는 기능을 넣어 순수민간 단체쪽의 개념에서 지원하여 구청이나 의회에서의 보고를 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아 그 규정은 넣지 않았음.

## 5. 토론자 및 토론요지

### ○ 토론사항

#### - 허명화위원 (반대토론)

상정된 본 조례안을 검토해 보건데 시민운동이라는 홍보와는 달리 전부 관변으로 시민운동이라 볼 수 없으며 또한 시민들에게는 땅 한평 사기 운동이라 해놓고는 내용적으로는 땅 한평 사고난 뒤 권리등 투명한 내용이 없으며 투명한 공개 행정을 하겠다는 그런 차원의 정관이나 조례 어느 부분에도 없으며 소액을 다수가 내고 소수의 30명이라는 이사회가 그것을 좌지우지 할 수 있도록 한 소수운영자의 편의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하였고 조례제정이 건박하다고 하나 심의를 보류할 것을 제안하며 만약 보류되지 않을 경우 반대토론을 개진함.

#### - 천승수위원 (찬성토론)

상정된 본 조례를 만드는 목적은 추경예산에서 출연금 10억이라는 예산을 우리가 승인해 주었기에 법적인 조치가 되어야 하며 우면산트러스트 사업의 완성을 위해서 정관이 잘 되어야 된다고 판단되어 정관을 보완, 수정한다는 단서를 달아서 이 조례를 통과시키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어 찬성토론을 함.

## 6. 수정안의 요지 : 없음

## 7. 심사결과 : 원안가결(출석위원 8명중 찬성 7명, 반대 1명)

##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 9. 기타 필요한사항 : 없음.

## 10. 체계자구정리내용 : 없음.